◆ 이 지침은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0-3판)

2021. 10. 15.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기준과

목 차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 5

1. 코로나19 개요 ····· 5

2. 목적 ····· 7

3. 기본방향 ····· 8

Ⅱ.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 9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 9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 10

3.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및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 11

4. 회의·교육, 모임·회식 및 출장 관리 ····· 14

5.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16

6. 위생 및 청결·소독 등 ····· 18

Ⅲ.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21

1. 유연근무제 활용 ····· 21

2. 기본방침 ····· 21

3. 휴가 및 휴업 관리 ····· 22

4. 가족 돌봄 휴가 ····· 23

5. 백신 접종자 휴가 및 접종 완료자 관리 ····· 23

Ⅳ. 코로나19 관련 Q&A ····· 25

1. Q&A(고용노동부) ····· 25

2. Q&A(질병관리본부) ····· 33

참고 자료

1.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63
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 64
3.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 69
4.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한 보건소 등 조치사항 ····· 70
5.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 75
6. 콜센터 안내 ····· 76
7. 격리해제 확인서 ····· 77
8.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안내 ····· 78
9.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79
10.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포스터) ····· 82
11.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홍보자료 ····· 83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16개 언어 번역) ····· 85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 ····· 86
14.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 지침 ····· 104
15.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사업장용) ····· 106
16.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4판) ····· 109
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120
1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콜센터용) ·· 134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6판) · 148
20.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 159
21.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 ····· 164
22.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 179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코로나19 개요

❶ 정의

○ ‘20.2.11 WHO에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novel 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약어 COVID-19)로 정함

※ ‘2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

❷ 임상적 특성

○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으며,

- 그 외에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등 다양함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전파경로)**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기침할 때 생성되는 침방울을 통해 사람 간 전파(비말감염)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

○ **(치명률)** 세계 2.16%(WHO, ’21.1.25. 기준), 우리나라 1.81%(’21.1.26. 기준)

○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 요인)** ①65세 이상, ②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③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④암, ⑤비만, ⑥장기 이식, ⑦흡연

❸ 진단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❹ 치료

○ 현재 코로나19 특이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급, 전해질 등 대증 치료

○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긴급승인이 되었거나 긴급승인을 준비 중임

○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치료

❺ 예방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 접촉 피하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 임산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4일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출장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해외로 출장하는 경우 아래 예방수칙을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 접촉 피하기

- 귀국 후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2 목 적

○ 본 지침은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3 기본 방향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 계획(사내 협력업체 포함)을 수립한다.

○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 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비치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포함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등 감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방역관리자는 본 지침 내용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Ⅱ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❶ 전담조직 구성

○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및 담당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라

- 사업장 위험도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시 및 점검한다.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협력업체,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립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❷ 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

○ 코로나19 확산 시 사업장 주요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를 대비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협력업체,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립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❶ 의심증상(발열 ·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 및 방문자의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1일 1회	■ 1일 2회 이상		

○ 발열 여부를 스크리닝하기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열감지(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

- 개인별 정확한 체온의 측정·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 **(인증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

○ 체온을 측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체온을 측정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한다.

* 만일 체온 측정 대상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손 소독 또는 손씻기를 실시

- 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체온을 측정할 경우, 체온 측정 전·후 손 소독을 실시한다.

* 체온 측정 대상자와 접촉한 체온계의 접촉부위를 알코올 솜 등으로 소독 또는 커버 등의 교환을 통해 올바른 측정 방법에 따라 주의하여 측정

❷ 사업장 내 발열 · 호흡기 증상자 발생 시

○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근무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

-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사업장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노동자를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등 다른 노동자와 분리하고

* 해당 노동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외국인 상담은 133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

- 이 경우,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귀가하고, 발열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

3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및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❶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 출근 전 확진환자*로 확인된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병원 방문 또는 자가격리 등 조치한다.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방문 사실을 즉시 알리고, 관련 정보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방문한 고객 중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사업주는 보건당국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사업주는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의 조치 명령을 적극 이행한다.

- 확진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붙임6)”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소독하고 소독 후 사용 재개는 같은 지침에 따라 사용된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소독한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시설 사용 재개 시점은 소독제별로 특성이 달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지침 부록1 참고)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를 착용하고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

○ 사업장 내 밀접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❷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 사업주는 확진환자 등의 회복·격리해제 후 업무 복귀 절차와 보수·휴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 내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사업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격리해제확인서(또는 음성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격리해제자가 요청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PCR검사 결과(음성확인) 대체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가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음성확인서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사업주는 복귀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및 연차사용 등에 대해서 사내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 (재택근무) 취업규칙 등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 → 코로나 특수성(전파 가능성 등) 고려 협의로도 가능('21.9월, 재택근무종합매뉴얼)

  * (연차) 별도의 유급병가 부여는 가능, 무급휴가(휴직) 강제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발생

○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업주는 감염 자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 강요, 집단적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인사상 불이익·퇴사 강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부당해고 등). 다만, 근로자의 감염 이유·경위가 회사의 방역·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 가능

  * (따돌림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 사업주는 복귀 근로자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코로나19 관련 정신·심리 지원기관) 정신건강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4 회의 · 교육, 모임 · 회식 및 출장 관리

❶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을 준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실시 금지

*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 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 금지

❷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기준에 따라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방역수칙 준수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예방접종자 포함 최대 8명 가능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	▪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인), 18시 이후(2인) 가능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가정 및 식당, 카페에 한해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명 가능 -미완료자는 4명(2명) 포함 가능

※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및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에 예외 허용

❸ 출장

○ 출장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한다.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을 준수한다.

○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여행경보 발령국가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 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체류자)신변안전유의, (여행예정자)여행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체류자)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유의): (체류자)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체류자)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여행 금지

※ 참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해외안전정보 - 최신안전소식

-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에게는 “개인위생수칙 및 다중밀집장소 방문 시 등 유의사항,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해외에서 입국하는 노동자는 보건당국의 능동감시, 전수검사(모든 입국자에 대해 1일이내 실시)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으로 격리 면제가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활용(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일괄 접수 및 관련 절차 안내)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 후 2주일간 자가격리하여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한다.

5 작업장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 · 휴게실 관리

❶ 사무공간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한다.

○ 책상 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 책상, 의자, 사무기기(마우스, 키보드 등), 문 손잡이, 스위치(버튼), 난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을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참고13) 참조

❷ 기숙사 · 휴게실 등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실내 휴게실 등이 있는 경우, 가구·비품, 침구·수건 등을 청소, 소독 및 세탁을 통해 청결히 관리한다.

- 기숙사의 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스위치, 세탁기 표면, 가스레인지 손잡이, 책상, 의자 등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휴게실 등에서 점심,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 등

- 3단계부터는 실내 휴게실 등 이용 시 대화를 금지한다.

❸ 구내식당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의 사용 전후에는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운영을 적극 활용한다.

* 예시) 부서별로 달리 운영(A부: 11:30~12:30, B부: 12:30~13:30)

○ 3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를 금지한다.

❹ 통근버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근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을 준수한다.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차량 매일소독 ■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금지	■ 1단계와 동일	■2단계+탑승자 기록	■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6 위생 및 청결 · 소독 등

❶ 방역 준비

○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을 지급·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 보호구(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품을 충분히 준비한다.

-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정제(비누 등) 또는 손소독제, 종이 타월이나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의 물품을 충분히 준비하여 비치한다.

❷ 방역 교육 · 안내

○ 노동자가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을 관리하도록 안내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등)는 자제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금지한다.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 방안*을 홍보한다.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사업장, 영업소 등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❸ 방역 관리

○ 기본적으로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되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발췌, '20.11.27)

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ㅇ 실외에서는 ❶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❷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

<상황별 권고 마스크>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상황</th><th colspan="2">보건용 마스크</th><th rowspan="2">수술용 마스크</th><th rowspan="2">비말차단용 마스크</th></tr>
<tr><th>KF94</th><th>KF80</th></tr>
<tr><td rowspan="2">의료 관련 상황</td><td>·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td><td>필수</td><td>-</td><td>-</td><td>-</td></tr>
<tr><td>·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td><td colspan="2">(우선) 권장</td><td colspan="2">권장</td></tr>
<tr><td>생활 방역 상황</td><td>·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td><td colspan="4">권장
*밀폐, 밀집, 많은 대화로 비말 생성 우려가 높은 경우 보건용마스크 우선 권장</td></tr>
</table>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한다.

○ 의료기관*, 항공사, 마트,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 청소, 세탁, 돌봄서비스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청원경찰 등 협력업체 포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설치수리기사 등 포함

-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소독제(알코올 손소독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 배송 및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으로 배송·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 사무실에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밖에서 응대한다.

Ⅲ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1 유연근무제 활용

◈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 등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

* 예시) 10시 출근/19시 퇴근, 8시 출근/17시 퇴근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가급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시차출퇴근제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 시간, 인원을 분배하여 운영한다.

2 기본 방침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및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및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한다.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단계별 유연근무·휴가 등 활용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 콜센터 등은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한다.

3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7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지원제외 대상: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월 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이후의 입국자(내·외국인 및 격리사유 무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❶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❷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4 가족돌봄 휴가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청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에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5 백신 접종자 휴가 및 접종 완료자 관리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u>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u>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 (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위와 같은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생활수칙 등 방역 관련 수칙은 예외나 특례 없이 동일하게 계속 적용한다.

-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를 취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1판」(참고22) 참조

Ⅳ 코로나19 관련 Q&A

1 Q&A(고용노동부)

❶ 휴업 휴가 관련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7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코로나19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❷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1/2 또는 2/3

○ 특별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9/10, 대규모 기업은 2/3를 지원합니다.

* 조선업(~'21.12.31.),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등 14개 업종(~22.3.31)

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업종*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유흥업소 등

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7.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별로 신청가능합니다.

8.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❸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1.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대상은?

○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E-9/H-2 외국인근로자로서 2021.4.13. 부터 12.31까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우리부에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추출하여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 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조치하고 있습니다.

-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 가능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3.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처리 결과를 받아 우리부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연락처가 없는 경우 안내 불가)

-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관할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①취업활동기간 연장대상자 추출 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고용부→법무부) ②체류기간 연장 대상 여부 확인 및 연장조치(법무부) ③연장결과 회신(법무부→고용부) ④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및 결과 안내(한국고용정보원, 고용부→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5. 코로나 19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고용허가신청 등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는 EPS홈페이지(www.eps.gp.kr), 외국인고용관리앱, 관할센터의 유선전화・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EPS홈페이지(www.eps.gp.kr)를 통해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변동신고,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수 있고

- 외국인근로자는 EPS홈페이지(www.eps.gp.kr)와 외국인고용관리앱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EPS홈페이지와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 송출국 16개국 언어로 지원

6.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등 체류지원을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로 연락하시면,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과 관할 선별진료소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팀에서도 통역원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연번	센터명	소 재 지	연락처
1	외국인력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1577-0071
2	한국센터	서울 구로구	02-6900-8000
3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031-838-9111
4	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055-338-2727
5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055-253-5270
6	인천센터	인천 남동구	032-431-4545
7	대구센터	대구 달성군	053-654-9700
8	천안센터	충남 천안시	041-411-7000
9	광주센터	광주 광산구	062-946-1199
10	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055-912-0255

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번역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번역자료*를 16개 언어로 번역하여 고용허가시스템(www.eps.go.kr)에 게시** 및 배포하였습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생활 수칙, 심각단계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등

** 고용허가시스템(www.eps.go.kr)→공지사항

2 Q&A(질병관리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0-1판) 에서 일부 발췌

* 코로나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❶ 병원체 정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떤 질병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COVID-19)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확인된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이 감염증의 새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ronavirus disease-2019)이며, 줄임말로 코로나19(COVID-19)입니다.

○ COVID-19에서 'CO'는 '코로나'를 나타내며 'VI'는 '바이러스', 'D'는 감염증을 나타냅니다. 이 감염증의 명칭은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명명 지침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 (출처) CDC, FAQ Coronavirus Disease 2019 Basics

4.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 코로나19는 SARS-CoV-2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과는 사람과 낙타, 소, 고양이, 박쥐 등 다양한 동물에 흔하게 서식하는 큰 바이러스 그룹입니다. 동물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 MERS-CoV 및 SARS-CoV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SARS-CoV-2도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SARS-CoV-2 바이러스는 MERS-CoV 및 SARS-CoV와 같은 메타-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전의 두 바이러스는 모두 박쥐에서 기원했습니다. SARS-CoV-2 또한 박쥐에서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재조합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CDC, FAQ How COVID-19 Spreads

5.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주로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비말에 의해 전염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등을 할 때 생성된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기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수상황에서 보통 비말이 도달하는 거리(2m) 이상까지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코로나19 환자의 대변이나 체액으로도 전염이 가능한가요?

○ 환자의 대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환자의 대변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물이나 하수

오물 같은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혈액, 뇌척수액, 소변, 타액, 눈물 및 결막 분비물 등의 체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 (출처)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7. 지역사회 감염이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 감염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발생 지역 방문이나 확진자와의 접촉력 없이, 언제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을 말합니다.

8. 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물체의 표면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비누와 물로 30초 동안 손을 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저온의 건조한 환경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존 기간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온도와 관련된 자료와 바이러스 비활성화에 관련된 온도 정보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 제한적이지만, 위도, 온도, 습도에 따른 코로나19의 분포 양상이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의 양상과 비슷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 (출처) CDC, FAQ How COVID-19 Spreads

▶ (출처) Temperature, humidity, and latitude analysis to estimate potential spread and seasonality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JAMA Netw Open. 2020 Jun 1;3(6):e2011834.

10. 모기나 진드기 같은 곤충이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수 있나요?

○ 미국 CDC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다른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모기나 진드기 등의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경로는 사람 간 전파입니다.

11.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냉난방기 가동시, 환기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는 비말, 접촉,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가능하며, 주된 감염경로는 2m 이내의 비말감염입니다. 공기감염은 흔하지는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배출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 가능하여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고, 공조장비설치 시설은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며 가능하면 자연환기와 병행합니다.

▶ (출처) Guidance for residential buildings, ASHRAE('20.10.5.)

❷ 증상

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참고.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입원 시 주요증상]
* (출처)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기침	41.8%	근육통	16.5%	설사	9.2%
객담	28.9%	인후염	15.7%	구토/오심	4.3%
발열 (≥37.5℃)	21.1%	호흡곤란	11.9%	피로/권태	4.2%
두통	17.2%	콧물	11%	증상없음	26.7%

2.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무증상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추가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3.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생활자,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천식, 심폐질환,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자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CDC, FAQ Higher Risk

4.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손가락이나 담배가 입술에 닿을 때, 오염된 손가락이나 담배에 있던 바이러스가 손에서 입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흡연자는 폐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에 걸리면 비흡연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smoking and COVID-19

❸ 검사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또는 시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분만환자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까지)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2.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비인두 또는 구인두 도말물 채취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3.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다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나요?

○ PCR 검사가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대상자의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검체의 질이나 양이 부적합한 경우, 감염의 초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검체가 채취된 경우, 검체가 부적합하게 배송되거나 다루어진 경우, 검사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시행된 검사에서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Laboratory testing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suspected human cases

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및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또는 시술)이 필요하거나 응급분만환자의 경우

○ 응급상황의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며,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7. 가래가 없으면 채취를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채취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8.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 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9.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질병관리청.「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20)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지침

10. 코로나 항체검사는 무엇인가요?

○ 항체 검사는 사람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여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에 대한 항체를 찾는 검사입니다. 항체는 감염이 된 이후에 생성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이전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SARS-CoV-2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1-3주 걸리므로 항체 검사로 초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감염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RT-PCR 같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 아직까지 항체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국내에서는 진단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처) CDC, FAQ Symptoms & Testing

11. 열 스캐너로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낼 수 있나요?

○ 열 스캐너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즉, 정상 체온보다 높은 사람)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하지만 열 스캐너는 발열 증상이 없는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환자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의 잠복기는 1~14일(중앙값 5~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12.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지원 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급여 청구방법은 기존 국비지원 명세서 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1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전액본인 부담도 불가).

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동행이 가능합니다.

4. 치료 및 예방

1. 코로나19의 치료법이 있나요?

○ 대증 치료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승인 되어 사용 중입니다.

2. 항생제가 코로나19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염에는 효과가 없고 세균감염에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므로 항생제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습니다.

○ 하지만 코로나19 중증의 환자에게 합병증으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동반된 세균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면역이 생기나요?

○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다시 감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재감염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 (출처) CDC, FAQ Symptoms & Testing

4.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5.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폐렴 백신이나 BCG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 폐렴구균 백신이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Hib) 백신과 같은 폐렴 예방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폐렴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 접종은 권장되고 있습니다.

○ BCG 백신을 접종시키는 국가가 BCG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는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발병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것이 BCG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아직까지 BCG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BCG 백신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 (출처) WHO, Baclille Calmette-Guerin(BCG) vaccination and COVID-19

7.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직까지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안경 착용자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지만,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은 콘택트렌즈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렌즈를 만지기 전 항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정/소독액을 사용해서 콘택트렌즈와 케이스를 소독하고, 청소 및 소독이 된 곳에서 렌즈를 다뤄야 합니다.

○ 콘택트렌즈 세척, 소독 및 보관용 과산화수소계 약제는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목적 용액(MPS)이나 초음파 세척기 같은 다른 살균/소독 방법은 아직까지 바이러스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출처) CDC, FAQ How to protect yourself

❺ 접촉자 및 확진환자

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부록 14]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참조)

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1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인도적 사유 발생으로 국적국가 또는 출발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시설 단장의 승인 하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지자체 누리집 → 지자체 코로나19 누리집 → 발생 동향 → 확진자 이동 경로

10. 확진환자의 정보 중 거주지 공개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확진환자의 거주지 세부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및 정보공개 주체가 시·군·구인 점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정보까지 공개 가능 합니다.

❻ 격리 및 격리해제

1.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이란 무엇입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동일집단격리(코호트) 영역에 배치해야 합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4.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검사 기반)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임상경과 기반)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6.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된 후 어떻게 관리하나요?

○ 당초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되는 환자도 보건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은 준수토록 하며,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7.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8.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되나요?

○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는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되어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는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12~13일) 시행 후,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가 격리자의 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인 경우는,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검체채취는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재채취 검체의 검사에서도 미결정이라면 '양성' 또는 '음성'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 그 외 사항은 "코로나19 검사 Q&A"(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을 참고

10.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이후 바로 등교/출근 할 수 있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관(담당의사)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2.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도 환자관리반은 관내 또는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와 직접 협의하여 시설배정을 결정합니다.

-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배정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13. 최초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 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검역단계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검역소 또는 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여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14. 격리면제서를 입국 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사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격리면제 제도는 특정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로 입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입국 전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가격리 중 장례식 참석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합니다.

15.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대상자인 경우 중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 입국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격리면제 기간 중이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16.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 입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가에서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보건소 의료진의 판단하에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 보건소 의료진의 격리해제 전 건강상태 확인 필요

17.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양성 반응은 어떤 의미인가요?

○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❼ 격리입원치료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참조

❽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1.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의 소견으로 코로나19 환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Ⅷ.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5.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 정보 →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❾ 청소 및 소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❿ 임신과 출산

1. 임산부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 코로나19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임산부가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그러나 임산부는 신체와 면역 체계의 변화로 호흡기 감염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2. 임산부는 어떻게 코로나19 예방을 할 수 있나요?

○ 임산부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야합니다. 다음 예방수칙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위생을 실시하세요.

-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2m(최소 1m)거리를 유지하고 붐비는 공간을 피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립니다.

-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3. 임산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임산부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4.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나요?

○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태아 또는 분만 중 아기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현재까지 양수 또는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5. 코로나 19가 수유를 통해 전염될 수 있나요?

○ 모유 수유를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6. 코로나 19에 감염되어도 수유 할 수 있나요?

○ 모유 수유는 신생아,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도움이 되며 엄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 엄마가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의심이 되더라도 손위생,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의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수유가 가능합니다.

○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다른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수유가 가능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⓫ 코로나19와 어린이

1.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얼마나 위험한가요?

○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에 비해 어린이의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일부 어린이와 유아에서 코로나19 발병 사례들이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성인입니다. 어린이는 코로나 19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경한 증상만 나타내며 좋은 예후를 보였습니다.

2.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의 증상은 성인과 다른가요?

○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린이와 성인이 비슷하지만,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경한 증상만을 나타냈습니다. 소아에서 보고된 증상으로는 열, 콧물,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등이 있었습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들 중 소수에서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중증 염증성 질환을 나타났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 (출처) Covid-19: concerns grow over inflammatory syndrome emerging in children BMJ 2020; 369.

⑫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무엇이 비슷한가요?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두 바이러스 모두 호흡기 증상을 주로 유발하며, 이는 무증상 또는 경증에서 중증 및 사망에 이르는 광범위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 두 바이러스 모두 호흡기 침방울(비말)이나 접촉에 의해 전염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바이러스 모두를 예방하기 위해 손 위생이나 호흡기 에티켓과 같은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출처) WHO, Q&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COVID-19 and influenza

2.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잠복기가 짧고, 전파속도가 빨라 지역사회에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사망률은 인플루엔자보다 높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세계 사망률은 5% 이상이며(WHO, 5/9일 기준), 인플루엔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0.1% 미만입니다. 사망률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Q&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COVID-19 and influenza

3.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지만,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긴급 승인되어 사용 중입니다.

○ 인플루엔자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않지만,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WHO, Q&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COVID-19 and influenza

4.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걸릴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다른 호흡기 병원체도 마찬가지)와 COVID-19 바이러스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⑬ 코로나19와 동물

▶ [부록 2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 참조

1.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그 외 동물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들이 질병을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에 감염되었습니다.

○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물건을 접촉하기 전·후에 손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코로나19에 걸리면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나요?

○ 전 세계에서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완치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3. 개를 산책시켜도 되나요?

○ 개와 산책하는 것은 개와 사람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한 상태로 산책합니다.

- 많은 사람과 개가 모이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⓮ 재검출 사례

1. 첫 확진 후 90일이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재검출이 나왔어요. 재감염 추정사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 세계 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출 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노출력에 의한 재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따라서 미국 CDC 재감염 의심사례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첫 확진 90일 이후 PCR 양성판정된 사례는 재감염 추정사례로 보고 신규 확진자에 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출처) CDC, Common Investigation Protocol For Investigating Suspected SARS-CoV-2 Reinfection

2. 격리해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검출이 나왔는데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격리해제 부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환자 의무기록 확인을 통해 격리해제 부적정이 확인될 시 격리해제를 취소하고 환자 재입원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 확진력이 있는 입국자는 당시의 코로나19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나요?

○ 국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확인 시, 관할 보건소에서는 제출받은 해외 확진 당시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등 증명자료를 근거로, 재검출 사례 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으로 사례판정 후 환자 및 접촉자 관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검역소에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와는 별도로, 해외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분들은 서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확진 당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의 증명자료를 가져오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4. 해외 확진력이 있는데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해외 확진 당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해외에서 확진 및 완치 후, 국내 입국 후 확진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의 증명자료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규 확진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5. 해외 확진 당시 증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코로나19 검사결과지'도 인정되나요?

○ 국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확인 시, 관할 보건소에서는 제출받은 해외 확진 당시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등 증명자료를 근거로, 재검출 사례 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으로 사례판정 후 환자 및 접촉자 관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검역소에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와는 별도로, 해외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분들은 서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확진 당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의 증명자료를 가져오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6. 첫 확진 후 90일이 지나 재검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노출력도 없고, 현재 증상도 없어 개인적으로 단순 재검출이 의심됩니다.

○ 첫 확진 90일 이후 재검출 시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재감염 추정사례로 간주하여 신규 확진자에 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 첫 확진 후 45-89일 사이 재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출력도 없고 현재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이러한 경우 별도의 관리조치는 필요 없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현재 위험도 평가를 위해 검출 사례조사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⓯ 기타

1.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감염병 NOW) www.해외감염병now.kr/infect/occurrence_list.do

▶ (외교부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dev/main.mofa

▶ (방문 전)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 주세요.

▶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는 제품 표면의 재질 및 주변 온도, 습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환경표면에서 생존시간이 다르고, 수일간 생존 가능한 것 경우도 보고되었지만 실온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출하되는 제품이나 포장에서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 미국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나 사례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FAQs

3. 해외에서 및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합니다.

▶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 등

참고 자료

참고1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어 코로나19로 의심이 되는 사람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일상 복귀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❶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❷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❸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1.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19인 이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이상(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 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 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6개월 이상 근속, 단축 근무 개시 이전 3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근무

○ **(지원요건)** ①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③단축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④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단축근무 중 초과근무 제한, ⑥근무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단, 대체인력지원금은 단축근무 이전의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추가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수준 (1인당 최대 한도, 월 기준)	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금	단축근무 시간에 따라 구분지급 •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 40만원 • 25시간 초과~35시간 이하: 24만원 단, 임신근로자는 40만원(법정임신기 주15~30시간)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정액)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10명 미만의 경우 3명)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급 • 중소기업: 60만원, • 그 외: 30만원	모든 기업

□ **(지원절차)**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매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 **(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참조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유형 >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❶**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❷**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❸**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 지원 기준 >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시차출퇴근제	10만원	20만원	120만원(6개월간)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1년간)

□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 운영)

○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 **(지원근로자 확대)**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신규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임산부·초등 돌봄 근로자)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 6학년) 자녀 돌봄 근로자**의 증빙자료 첨부 시 **재택근무 지원 우선 승인**

4.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 **(개요)**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직접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❶고용센터에 **사업신청·계획서 제출**(구축 예정 인프라 견적서 첨부)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❷사업계획 승인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❸** 취득장비 **사용의무기간**(3년)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최대 3년 이내, 사업장 자율로 결정) 준수

*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도 함께 신청해야 함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직접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참고3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는 피해보상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21.05.10. 보도참고자료「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붙임16)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참고4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한 보건소 등 조치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5판) 에서 발췌

※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

1. 정의

분류	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진단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자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감염병 의심자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가능) ※ 역학조사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 14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하여 보건소에서 조사 ②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접촉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함(역학조사 외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가능)

2. 확진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등 조치사항

1 확진환자

○ 격리 통보 및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치료, 시설격리(생활치료센터) 실시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자,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1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이 충족시 격리 해제

▹ (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 (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하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2회 음성

2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이 충족시 격리 해제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최소 24시간(인공호흡기 등 위중증 치료자**는 48시간)동안 ①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②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검사 기반 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2회 음성이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2 의사환자

○ 격리 통보 및 검사 안내

○ 진단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양성) 확진환자 조치

▹ (검사결과: 음성) 확진환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능동감시 실시

3 조사대상 유증상자

○ 보건교육(선별진료소·일반의료기관)

◈ **보건교육**

-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출(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 타인과의 접촉(식사 포함), 대중교통 이용
- **(해야 할 일)** 개인 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타인과 대화 시 2m 간격 유지하고 간격 유지가 안 된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우선 문의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선별진료소·일반의료기관)

▷ **(양성)** 확진환자 조치

▷ **(음성)** 입국 후 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 조사대상 유증상자**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4 자가격리자

○ **(대상)** 감염병의심자

○ **(절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 통보 및 격리자 상태 정기적으로 확인

○ **(기간)**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14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 **(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1판('20.6.24), 보건복지부]을 적용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방문서비스를 허용함

▷ **(사유)** 난방, 가스, 수도 등 자가격리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수리 서비스로서 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

▷ **(절차)** 자가격리자가 지자체에 방문서비스 허용 요청 → 지자체 허용여부 결정 → 허용 시 지자체가 자가격리자와 방문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동시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

* 비대면 거리두기(방문서비스 중 별도공간 대기, 계좌이체 등 비대면 결제 등), 마스크 착용(KF-94 동급), 집안 환기·소독 등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손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실시

○ **(자가격리 해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 환자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다만,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①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③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④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 ⑤만 65세 이상 접촉자, ⑥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입국자 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입국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 단, 시설격리일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

참고5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 감염병 예방법

< 참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근로기준법」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질병관리청 고시

<참고>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6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참고6 **콜센터 안내**

□ 코로나19 콜센터(1339 및 지역번호+120)

▷ 주요 상담 기능: 질병정보,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외국어 상담)**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❶한국관광공사(☎1330) 또는 법무부 ❷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

<1330 관광통역 안내전화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8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09: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일본어(日本語)
09:00~18:00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말레이어(بهاس ملیسیا), 러시아어(Русский язык)
* 주요상담기능: 숙박예약, 교통, 문화, 입장권, 외국어통역 등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20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평일)09:00~18: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일본어(日本語),몽골어(Монгол), 인도네이시아어(Bahasa Indonesia), 프랑스어(français), 방글라데시어(বাংলা), 파키스탄어(اردو), 러시아어(Русский язык), 네팔어(नेपाली), 캄보디아어(ភាសាខ្មែរ), 미얀마어(မြန်မာစာ), 독일어(Deutsch), 스페인어(español), 필리핀어(Tagalog), 아랍어(العربية), 스리랑카어(සිංහල)
(평일)18: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평일)22:00~익일09: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토·공휴일)24시간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 주요상담기능: 외국인 행정 및 생활종합안내(출입국, 비자, 체류, 귀화 등)	

참고7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Admission · Discharge			
성명 Name		생년월일 Birthdate	
격리해제 장소명 Name of discharge plac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예시) HOME, ○○ Medical Center(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격리시작 일 Start Date of isolation		격리해제 일 Discharge Date of isolation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하였음을 확인함.

We confirm that this person is discharged according to me.eting the standard of COVID-19 Isolation/Quarantine Release

발행일: (예시) 2021.○○.○○

△△ 보건소장 (인)

참고8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안내**

□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됨

<참고> 최근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례

[조회·모임]

□ (사례1) 매일 아침 150명 이상의 직원을 모아 조회하고 체조 진행

□ (사례2) 직원 수십명을 모아 사내 족구 대회를 개최

[회식]

□ (사례1) 회사 인근 식당에 10여명이 모여 단체회식

[사무실]

□ (사례1) 소규모 업체가 모여있는 아파트형 사무실의 직원 대부분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근무하여 관리실에 항의해도 방치

□ (사례2) 출입자 발열체크 없이 대부분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근무

[구내식당]

□ (사례1) 테이블 간 거리도 좁고, 칸막이도 일부만 설치

□ (사례2) 30여명의 근로자들을 구내식당에 모아놓고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3시간 넘게 단체회식을 강행

□ (사례3) 식당 조리사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조리와 배식

[공사장·함바식당]

□ (사례1) 근로자들이 목토시만 착용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작업

□ (사례2) 출근 시간에만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식사중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관리자가 방치

□ (사례3) 공사장 인근 함바식당에서는 명부작성, 체온측정, 일회용 장갑 착용 및 거리두기 없이 손님을 받아 신고

참고9 |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새로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웹포스터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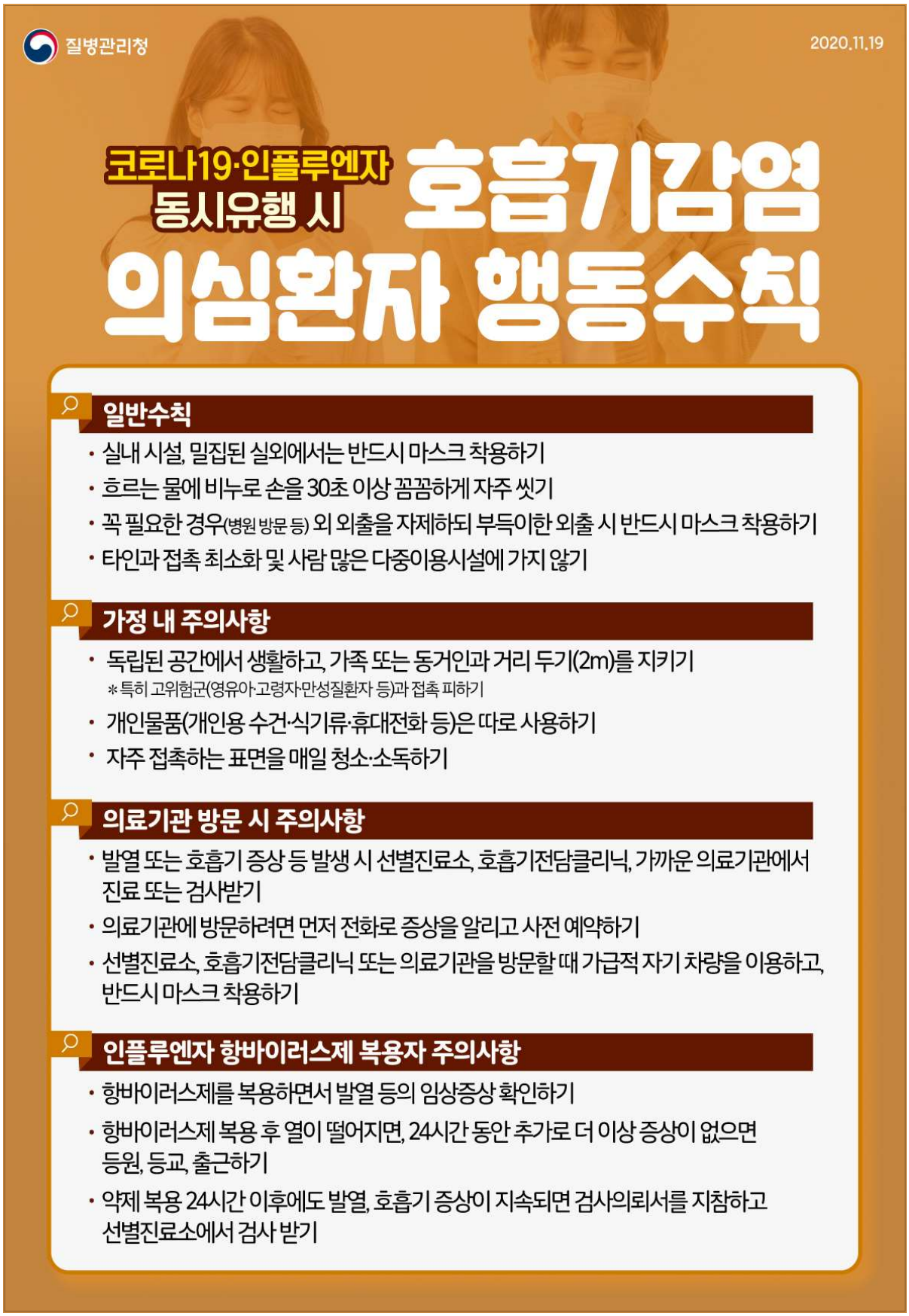

□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참고10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포스터)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전담 조직**(전담자) 지정,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안내·전파**
- 의심환자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사무실 환경개선

- **노동자간 간격**을 최대한 **확대**하고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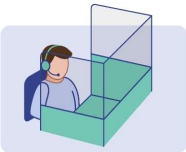

- 노동자 사이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90cm)

- 다중이용공간 일시 이용 제한, **집단행사 및 각종 모임** 등 **연기 또는 취소**

3 근무형태 관리

- **유연근무제 활용**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점심시간 시차운영**

- **연차휴가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업무·인사 등 **불이익 금지**)

4 위생·청결 관리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 **공조기·공기청정기** 등 설치 및 **주기적 환기**(2시간 마다)

- **책상, 의자, 사무기기, 손잡이, 난간, 스위치** 등 **소독**(1일 1회)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접촉면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소독**(1일 1회)
- 사무실, 휴게실, 복도 등 **다수 이용 공간 청결 유지, 소독**(1일 1회)
  *약국 판매 소독용 알콜 등 사용 가능

5 의심증상 대비 및 발생 시 조치

- **자체 발열**(37.5℃ 이상) **모니터링*** **실시**(출근 시, 1일 2회 이상)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 활용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
- 보건당국 지시가 없는 경우 **병가, 유급휴가 활용** 및 **귀가 조치**

2020-교육홍보-14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참고11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홍보자료**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포스터 3종(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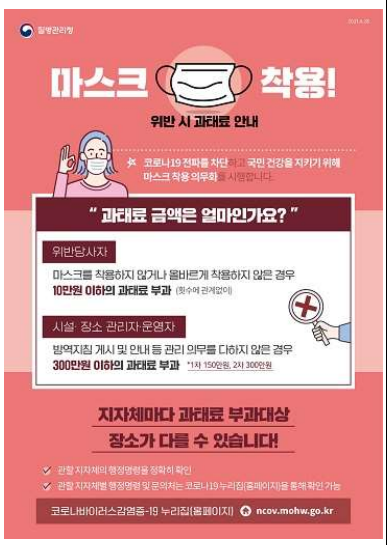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주의해야 할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포스터 3종(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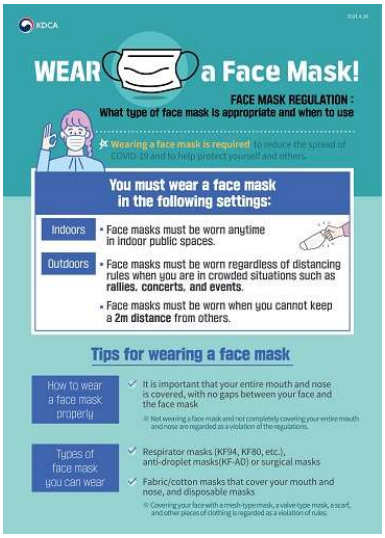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주의해야 할 경우

□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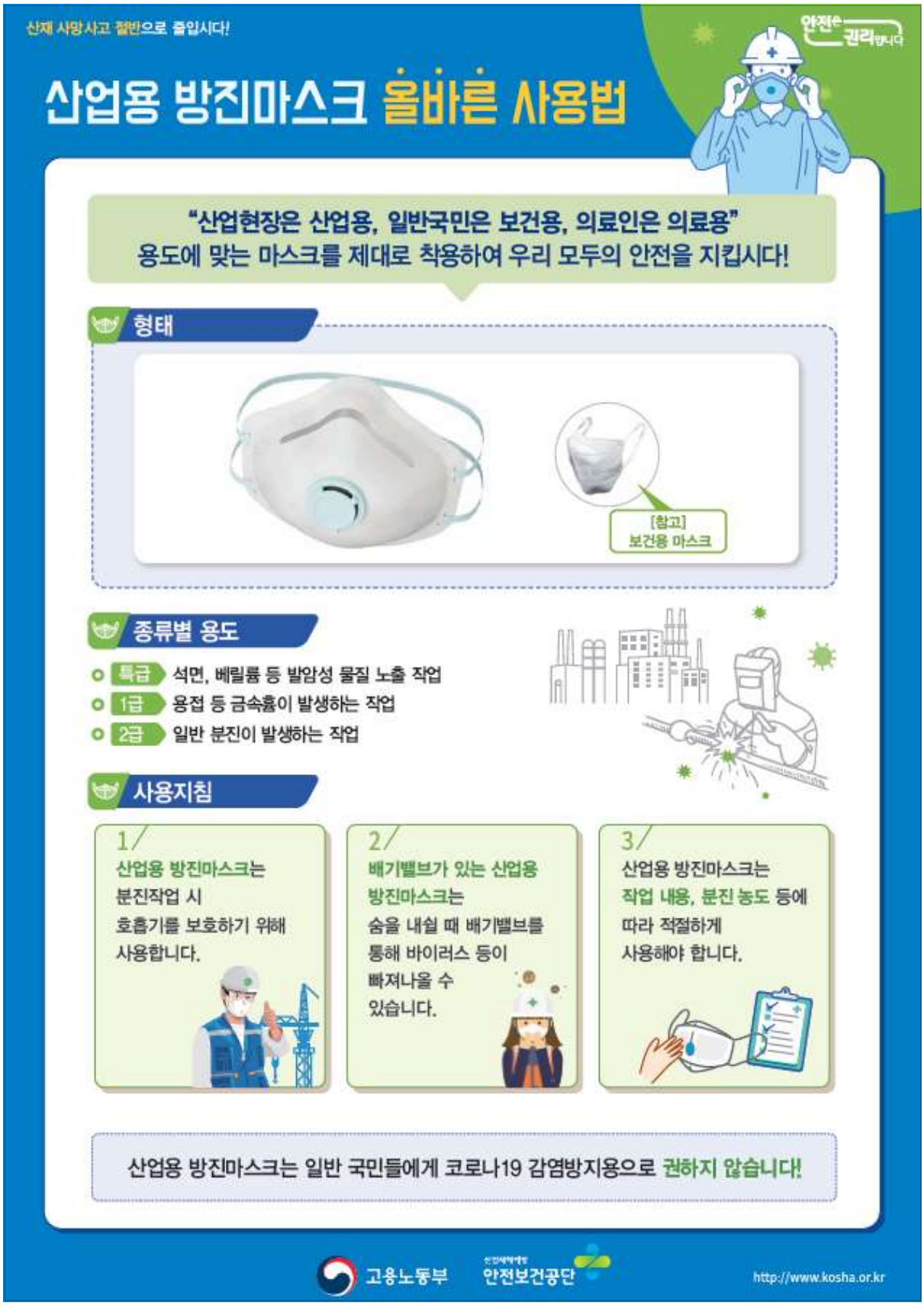

참고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16개 언어 번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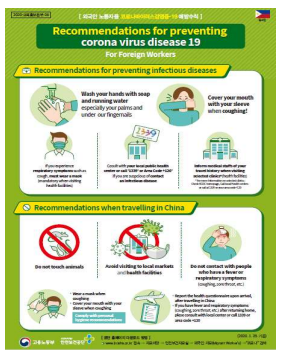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료실 -> 외국인고용지원)**

참고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8.20. 일부 발췌)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검색

Ⅰ 개요

1. 법적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 본 지침은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법령의 규정을 준수

-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므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소독관련 세부사항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항을 준수**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등 **[붙임 1]**

2. 목적 및 적용 범위

○ **(목적)** 소독의 개념과 효과, 환경 소독제 종류와 유의사항,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19 정보를 토대로 제시하는 올바른 소독방법, 대체 소독방법관련 정보 등 기타 소독관련 중요 정보 제공

○ **(적용 범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 시설 관리·운영자, 개인 및 소독업무 대행 소독업자 및 예방적으로 환경 소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 **(적용 상황)**

- **(환자 이용 장소 방역)** 환자가 이용한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일상적 예방)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소독 기준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준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홈페이지-관련기관별 대응지침 참조)

3. 개념 정의

○ **(청소(세척), Cleaning**[1])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소독과 멸균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같이 사용

○ **(소독, Disinfection**[2])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에 의해 이루어짐

○ **청소 및 소독의 효과**

-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면 표면과 물체에 있는 감염성 병원체가 불활성화 되지는 않으나 **병원체 수가 감소하여 감염 노출 감소**

- **소독**하면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 더욱 감소**

1) 2)「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참조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물체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은 코로나19 및 기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전파경로 및 감염력 유지 기간】

① **(전파경로)**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묻은 물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음

② **(감염력 유지 기간[3])** 특정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물체의 표면상에서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7일

4. 환경 소독제의 종류

○ **(환경 소독제[4] 종류)**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환경부 소관이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승인 제품**(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및 **신고 제품**(일반 살균제) 품목으로 관리

♣ 법적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 손소독제(의약외품), 의약품 및 식품관련 소독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승인 제품, 소독업자 방역용)**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 소독업자(업체)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해야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개인보호구 착용 및 주의사항 준수 필요**

3) 참고문헌) N Engl J Med. 2020 Apr 16;382(16):1564-7, The Lancet Microbe 2020 Apr 10.1016/S2666-5247(20)30003

4) 환경 소독제는 물체표면 또는 **환경에 대한 소독용**이며,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 식품이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임

【 승인 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승인소독제는 단단한 표면 및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면 소독용
  -(WHO) 자연 환경, 거리 등을 소독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 할 수 있음

② 분무/분사 및 연무형으로 승인(표면을 덮을 정도로 도포) 되었더라도 닦는 소독 권고

③ 초미립자 분사·살포용으로 신고·승인된 제품 없음

- **(신고 제품, 자가소독용)**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환경부에 신고 → 가정, 사무실 내 자가소독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소독업자의 방역용으로 사용불가

  * (사용관련 문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1800-0490

5. 대체 소독 방법의 국내·외 현황

○ 국내 현황

- 현재 비(非) 의료용 환경소독 관련 장비의 **소독 효능 인증 기준 미비**

  * 감전, 화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만 충족하는 제품 목록은 국가기술표준원(www.safetykorea.kr,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 환경부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승인받은 것이고 장비를 활용하여 인체에 직접 분무/분사가능한 제품은 없음

  * 인체용 소독제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함

○ WHO

- 비(非) 의료환경에서 소독을 위해 손이나 피부에 UV를 조사(照射)하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됨

  *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씻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임

- **소독 터널, 캐비넷**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환자의 비말전파 또는 접촉전파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흡입에 따른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음

○ **미국 CDC**

-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알려져 있지 않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II 소독 시 주의사항

1. 일반 원칙

○ **(소독 계획 수립)** 시설관리자는 일상 소독 및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및 접촉이 잦은 공간 및 물체 표면 대상 소독시행

*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시 업체에서 수행

○ **(소독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담당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 **(소독 도구)** 가능한 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소독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 시행**

- 환기 시 실내 공기 중의 감염원 및 소독제 유해성분 배출

○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저하되므로 소독 전에 표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

○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

☞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및

[붙임 8]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2. 소독 전 준비사항

○ **(소독 도구 준비)** 소독제, 물,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대걸레 등

  *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 시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등을 착용하고, 환자 이용 공간 소독 시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을 추가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

○ 환경소독제 선택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 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음

<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농도·접촉시간·적용대상 >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표면 접촉 시간	적용대상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0.05% (500 ppm)	5분 이상 (ECDC 참고)	·일상 표면소독
		0.1% (1,000 ppm)	1분 이상 (WHO 참고)	·일상 화장실 소독 ·환자이용공간 표면 및 화장실 소독
		0.5% (5,000 ppm)		·환자 혈액 및 체액 소독
알코올	에탄올	70% ~ 90%	1분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이소프로판올	50%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4급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0.05% ~ 0.5%	10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5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0.12%	30초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는 사용 용도에 적합한 소독제 선택

*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지정)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8)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5페이지 참조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붙임 7, 8)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3. 소독 시 주의사항

○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 → 비누 손 세정 → 마스크 제거 → 비누 손 세정 → 새 마스크 착용 → 새 장갑 착용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소독 시 체크리스트(예시)】	
☐	(소독 범위 설정) 접촉이 잦은 표면, 확진자 또는 의심자 이동 동선 등
☐	소독 전, 충분한 환기 실시
☐	환경부 승인·신고된 소독 제품 사용
☐	소독제 라벨에 표시된 제조사 사용법 준수 (유효농도, 접촉시간 등)
☐	적절한 개인보호구(PPE) 및 청소용품 준비
☐	소독 전, 눈에 보이는 오염된 표면을 물과 세제(또는 비누)로 청소 실시
☐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실시
☐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기
☐	충분한 환기 실시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①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 보행로와 도로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음

②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③ 본 안내서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청소·소독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 필요

☞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1. 청소 · 소독 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 · 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최대 24시간 환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

○ 소독제 희석액 준비

-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필요시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1,000ppm 이상 농도의 희석액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

최종 염소 농도	희석액 만드는 방법
0.05% (5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1% (1,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1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5% (5,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x 0.05÷5=5ml

【청소·소독 순서(예시)】

① 침대 시트, 일회용 커튼 등을 제거
② 모든 물건 또는 가구 표면을 청소·소독
③ 창문, 창틀의 청소·소독
④ 침대 및 매트리스 청소·소독
⑤ 바닥 청소·소독
⑥ 침대시트, 커튼 등을 새것이나 소독된 것으로 교체

○ **(소독 전 처리)** 표면이 이물질(유기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①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유기물) 등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②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 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청소 및 소독할 때는 닦는 방법 권고

*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금지

○ **(바닥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쓸어 내릴 것

○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청소·소독 도구)** 한 공간에 사용된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하고,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

①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

② 세부적인 소독 절차는 [붙임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 참조

2. 세탁 방법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매번 사용 후 폐기하며 사용 가능한 장갑을 다른 가정용으로 재사용해서는 안 됨

* 일회용은 반드시 사용 후 폐기

○ 환자의 세탁물을 흔들지 말 것

○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

- 온수 세탁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70℃ 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하며,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60℃ 이하에서 세탁

** (소독제 목록·정보)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 http://ecolife.me.go.kr

○ **(세탁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손세탁

○ 세탁하고 완전히 말릴 것

*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에서 2시간 동안 건조 권장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자가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세탁물 운반 시 일회용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 또는 기타 카트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독하고 재사용

○ 사용한 옷걸이는 표면 소독에 따라 소독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직물의 경우 폐기

○ 세탁 후에도 일회용 장갑 등을 벗고 반드시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류 등 린넨물의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 준수

3. 유의사항

○ **(직원 사후 관리)** 청소·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올바른 소독방법 콘텐츠 활용 안내】

▹(카드뉴스) 기관홈페이지(www.kdca.go.kr)→알림·자료→홍보자료→카드뉴스 "소독" 검색
▹(영상) 기관홈페이지(www.kdca.go.kr)→알림·자료→홍보자료→영상자료 "소독"

Ⅳ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 코로나19 유행 시 지역사회 일상 소독방법을 제시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한 후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1. 청소·소독방법

○ **(적용 대상)**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사무실, 직장, 학교 등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소독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준비)**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표면 소독은 500ppm, 화장실 소독은 1,000ppm을 사용하며,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 **(청소 방법)** 세제(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음

* 청소만으로도 병원체 수가 감소하여 감염 노출 감소하나, 추가로 소독하면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 더욱 감소

○ **(소독 방법)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횟수)** 하루 1회 이상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

☞ [붙임 7], [붙임 8] 참조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 등 이용이 빈번한 장소의 경우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함

- **(화장실)** 소독제(예: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희석액)를 사용하여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청소·소독 도구)**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 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2. 유의사항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용품(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청소・소독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붙임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 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 가능(소독하고 하루정도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시설·다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 (구역)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희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의료기관 (병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2회 이상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3회 이상 시행 ·환자 퇴실 후 시행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용)」안내('20.3.16.)
의료기관 (의원급)	·코로나19 의사환자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의원급 의료기관용)」안내('20.2.11.)
의료기관 (응급실)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 이후 진료재개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20.2.20.)

참고14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 지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2020.09.01.)

1. 기본원칙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관리를 집중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 유선 및 서면 등으로 지도(~2단계 해제시까지)

※ 다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이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관리 실시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방문 전 유선으로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확진자와의 접촉자(이하 '확진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방문, 유선 및 서면지도, 유예 여부를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

2. 사업장 지도방법

1 사업장 방문지도

○ 감염병 예방 및 확산과 관련하여 보건관리가 필요하거나 확진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으로써 통상적인 사업장 보건관리 지도가 필요한 사업장은 방문지도

* (유의사항) 사업장 방문 시 손소독·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철저, 사업장 방문 후 발열·기침 등 증상 발생한 경우에는 1339 또는 보건소 신고 후 자가격리 실시

2 사업장 유선 및 서면지도(사업장 관리카드 작성·유지)

○ 확진자 등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지역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은 유선 및 서면지도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행요원이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담당 사업장에 대해 유선 및 서면지도 가능

3 사업장 지도 유예

○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이 휴업·폐쇄된 사업장은 지도를 유예하되

- 휴업·폐쇄 종료 시 사업장과 일정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문 또는 유선 및 서면지도 실시

3. 주요 지도내용

○ 보건관리 기술지도에 추가하여 사업장 방역 관련하여 지도 실시

○ 사업장 기술지도 전에 유선으로 사업장 내 확진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대응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을 제공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 점검표(붙임1 참조)」를 활용하여 사업장 대응지침 이행 지도

* 콜센터의 경우 붙임2의 콜센터 점검표 활용

4. 유선 및 서면 지도시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따라 유선 및 서면지도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문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사업장으로 하여금 붙임 자체 점검표를 작성토록 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후 방역지침 준수 유선 지도

* 자체 점검표를 회신받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사업장에 서면 지도 실시

참고15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사업장용)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021.6.29.)

❖ **(배 경)** 기존 유예 안내 기준('20.11.18)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유예가 **'21. 7. 1.** 로 종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새롭게 개편·시행 ('21.7.1.) 됨에 따라 지침을 보완할 필요

❖ **(원 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진단 실시**

❖ **(방 법)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Ⅰ 적용 기준

○ **대상: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기간**: '21. 7. 1.(목)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발령 기준

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1 기본 사항

○ **(공통)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21.7.1.)**」** 기준 **3, 4단계**(유예단계)가 될 경우 다음 표와 같이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 **유예된 건강진단은 2단계 이하**로 내려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

- 다만, **유예단계**(3, 4단계)**라도 근로자가 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

-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붙임)**을** 따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특수·배치전			「7개 유해인자*를 제외」하고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2 일반건강진단

○ '20년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유예는 **'21. 7. 1일자로 종료**

【참고】 '20년 일반건강진단 유예(~6.30.까지) **실시 한 근로자**

❶ 다음 검진은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모두 '22년까지 실시

❷ 다만, 사업주는 **비사무직 근로자**(검진 주기: 매년)**가** '21년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21년 하반기 중에 실시해야 함

구 분		21년(상)	21년(하)	22년
사무직(2년주기)	'20년 건강진단 유예실시한 자	'20년 건강진단 (~ 6.30 까지)	-	'22년 건강진단 (1월~12월 까지)
비사무직(1년주기)	'20년 건강진단 유예실시한 자 - '21년 건강진단 희망자		'21년 건강진단 (희망자에 한해 실시)	

3 특수 · 배치전 건강진단

○ **종전('20.11.18) 지침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이어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이 계속 유예 중인 근로자는 '21. 9. 30일까지 실시를 완료**

【참고】 유예기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주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

❶ **주기별 특수건강진단**은 원래 받았어야 하는 날이 아닌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❷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유예기간에 받은 경우 실제 받은 날이 아닌 **배치일을 기준으로 다음 특수건강진단 시기를 계산**

Ⅲ 행정 사항

○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1. 7. 1일자로 **효력을 종료**

붙임 코로나19 위기경보 시기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방법

❖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 **(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

1.글루타르알데히드	8.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15.나무 분진	22.안티몬과 그 화합물
2.디에틸렌트리아민	9.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 (무수 프탈산)	16.니켈 및 그 화합물	23.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3.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 (무수말레인산)	10.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7.광물성 분진	24.용접 흄
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11.황화니켈	18.면 분진	25.카드뮴과 그 화합물
5.베릴륨	12.(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19.석면분진	26.크롬과 그 화합물
6.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정함)	13.미네랄 오일미스트 (광물성 오일)	20.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정함)	27.텅스텐과 그 화합물
7.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4.곡물 분진	21.유리섬유 분진	

○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

참고16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4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2021.09.01.)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참고]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최저 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2시간	▸ (일반)16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	▸(일반) 1시간 ▸(건설업) 4시간	-	▸ 1시간	▸ (일반)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업무) 8시간
	관리감독자	-	▸ 연 16시간	-	-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출처: '21.7.19.,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에서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발췌하여 정리

□ 공통사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집체교육**으로 하려는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실시**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2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음식섭취 자제(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교육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붙임2)*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붙임3)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붙임4)

○ **(유증상자)**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 포함)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

-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조치 및 **상호접촉 자제** 안내

- 이후, **방역당국**에 **연락***하여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 및 관할 보건소로 연락

○ **(확진환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에 적극 협조·이행

- 교육기관은 **확진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에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상황 전파,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교육생**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3 감독 ·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21.9.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3)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장 책상 배치 및 근로자 간 일정 거리 유지 (두자리 띄어 앉기)	□ 예 □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터링 등	1)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기록(1일 2회 이상)	□ 예 □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3)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청결 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1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성 명 (인)

대 표 자 명 : 성 명 (인)

붙임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21.7.1)**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붙임 3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방문자 등)가 확인된 경우

↓

즉시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의심환자 외 교육기관 내 모든 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및 방문자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심환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방역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의심증상자는 즉시 귀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일상 복귀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❶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❷ 사업장 내 상황 전파
(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방문자 등 포함)

❸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 4 |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일반국민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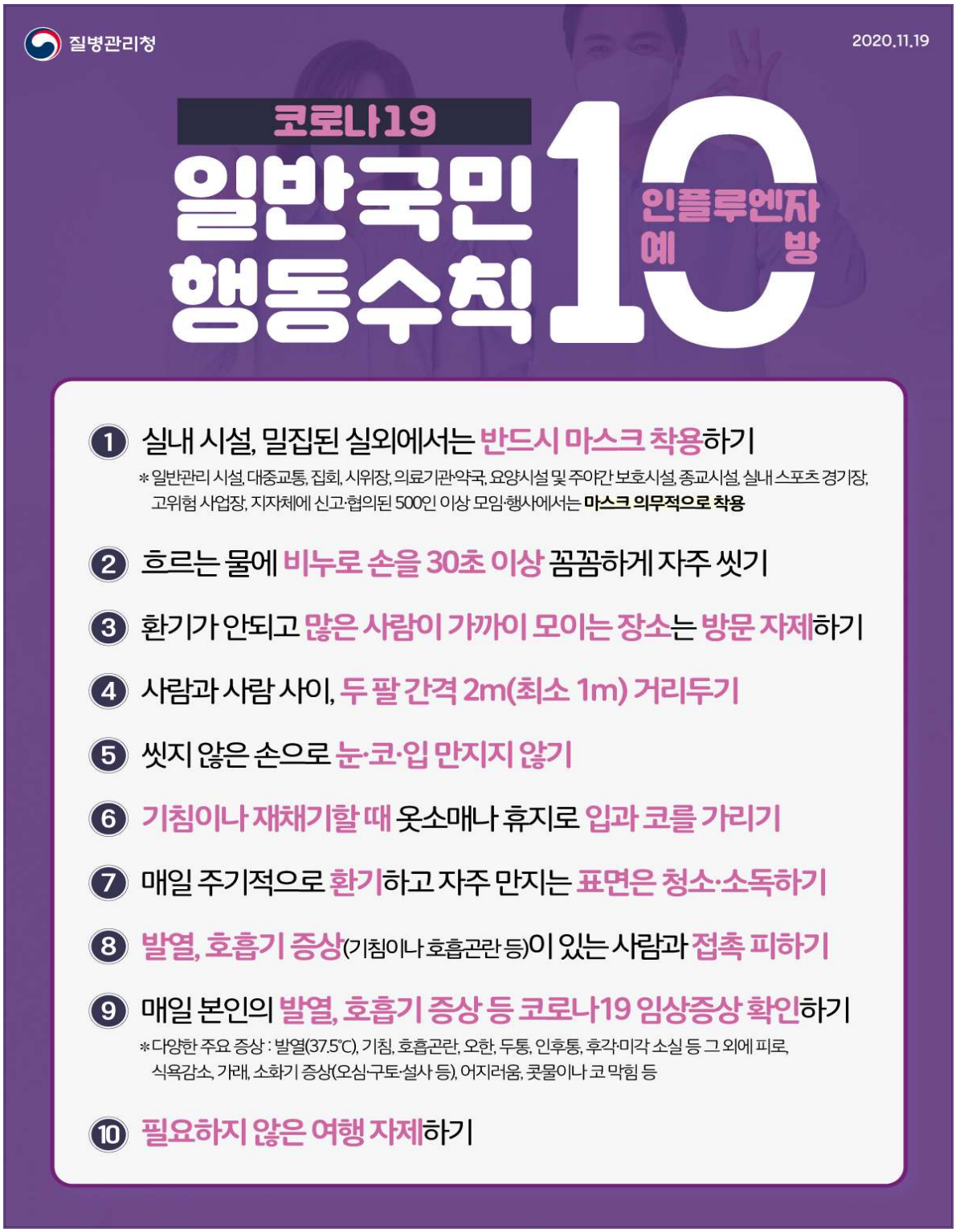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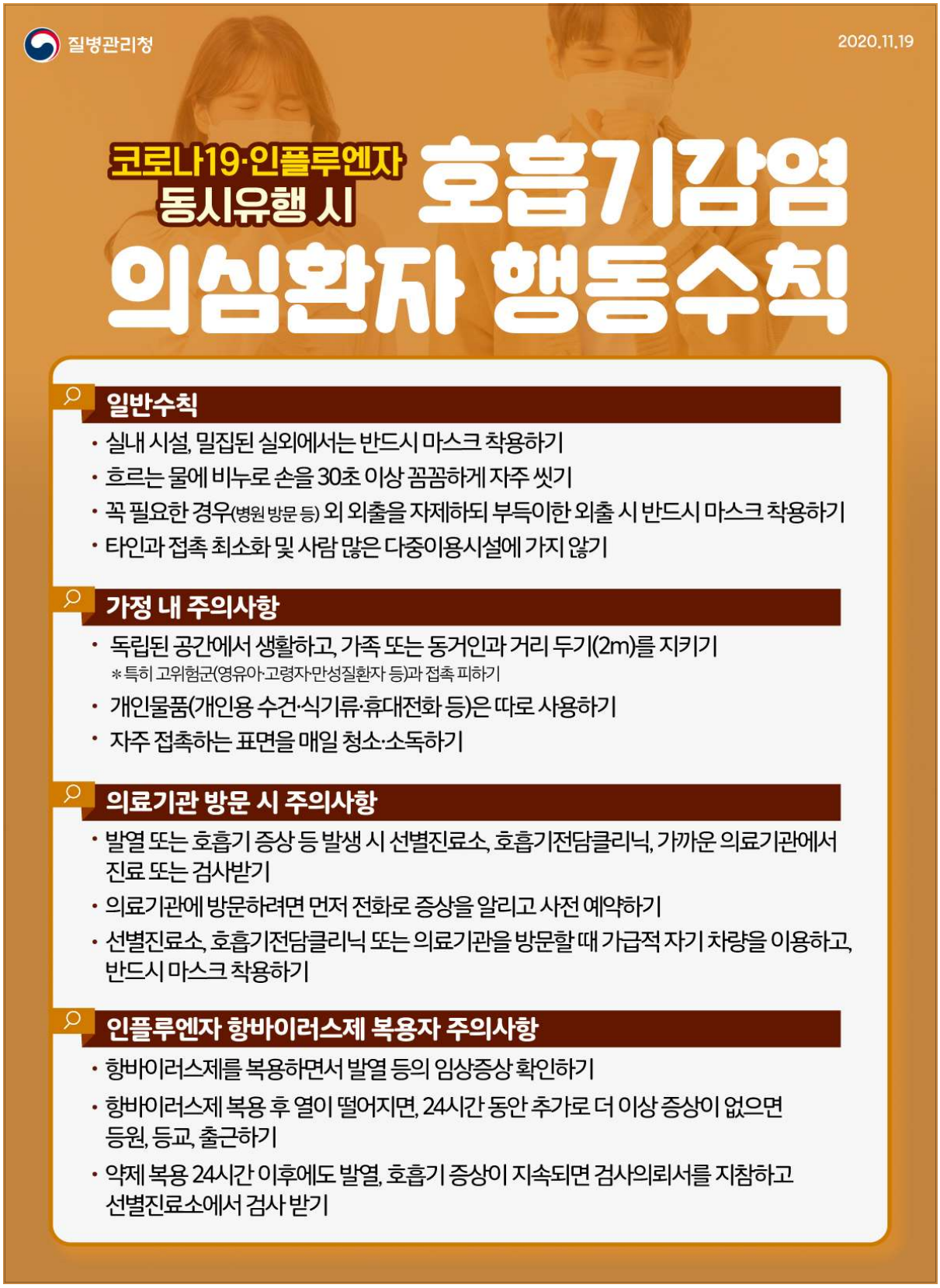

□ 마스크 착용(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질병관리청

2021.4.26.

마스크 착용!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

실내	▪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참고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2021.7.19.)

< 지침 시행 배경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7.1)

○ (배경)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맞게 지침 개정 필요

○ (주요 개선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 지침 활용

○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 단계를 적용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 · 교육 및 모임 · 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인센티브는 7.25.까지 미적용)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단계별>

○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역수칙 준수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인), 18시 이후(2인) 가능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일 1회	■1일 2회 이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 · 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책상 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단계별>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2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 **4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단계별>

○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차량 매일소독 ■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금지	■ 1단계와 동일	■2단계+탑승자 기록	■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7 기숙사 관리

<공통사항>

○ 방역수칙 게시(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 및 외부인 출입금지, **매일 2회 이상 환기**

○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 손씻기·손소독,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

<단계별>

○ 2단계부터는 **1인 1실 사용**(권고),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단계별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제한 없음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붙임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남/여)**	명(/)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 수립 □ **미수립**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예 □ **아니오**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예 □ **아니오**	
	5)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명부 작성 및 관리(자체 시스템 활용가능 제외)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예 □ **아니오**	
유연 근무 및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1단계) 자율시행, (2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 (3단계)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 (4단계) 재택근무 30%	□ 예 □ **아니오**	
	2)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예 □ **아니오**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예 □ **아니오**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	□ 예 □ **아니오**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 예 □ **아니오**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회의·교육, 모임 및 회식, 출장 등	1)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예 □ **아니오**	
	1-1)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 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사자 참석 금지) 준수	□ 예 □ **아니오**	
	1-2)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단계) 500명 이상 지차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미만 실시, (3단계) 50인 미만 실시, (4단계)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을 띄우기 또는 비좌석일 경우 1인당 면적 6㎡ 확보 등 기준 준수	□ 예 □ **아니오**	
	2)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3단계부터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예 □ **아니오**	
	3)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 예 □ **아니오**	
	4)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예 □ **아니오**	
	4-1) 모임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3인 이상 금지(18시 이전은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예 □ **아니오**	
	5)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예 □ **아니오**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1)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 (1단계) 1일 1회, (2~4단계) 1일 2회 이상	□ 예 □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3)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근무 중 발열**(37.5℃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하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사무공간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 예 □ **아니오**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및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 · 책상 ·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 예 □ **아니오**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	□ 예 □ **아니오**	
	4-1) 개인 간 거리 유지	□ 예 □ **아니오**	
	4-2)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예 □ **아니오**	
	4-3)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2단계부터 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예 □ **아니오**	
	4-4) 식사 시 대화 자제(3단계까지) 및 금지(4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5-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4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소독 및 위생 · 청결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정기 **소독**	□ 예 □ **아니오**	
	2) **매일 2회 이상 환기**(4단계부터는 3회 이상)	□ 예 □ **아니오**	
	3)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 예 □ **아니오**	
	4)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매 지원	□ 예 □ **아니오**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6)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	□ 예 □ **아니오**	
	7) **손 씻기·손 소독, 기침 예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예 □ **아니오**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 예 □ **아니오**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9)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매일 차량 소독**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10) **통근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10-1) 탑승자 **기록 의무화**(3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10-2) 음식물 섭취 금지, 차량 내 마스크 착용(1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10-3) 한자리 띄어 앉기(4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기숙사 관리	1) 방역 수칙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로 된 방역 수칙 게시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2)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 출입 통제 시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3) 매일 **2회** 이상 환기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4) 1인 1실 사용(권고) * 2단계부터 적용하며, 시설면적은 8㎡당 1명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5)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보건소별 결과를 개인에게 문자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문자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 보관기한은 퇴소 시까지 유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점검 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 작성**
통근 차량 또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없음"에 일괄 Check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21.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붙임2

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일상 복귀	❶ 보건당국의 조치 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❷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❸ 확진 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3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구 분	1 단계	2 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방역체계 마련	모든 사업장(1인 이상)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지정, **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 보건소 등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 돌봄,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자율**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권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재택근무 30%**(권고)
회의·행사·교육 등	**500인 이상** 참여시 지자체 **사전 신고**	영상 실시 대면은 **100인 미만** 실시	영상 실시 대면은 **50인 미만** 실시	워크숍, 연수, 행사 등 **대면 금지** ※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은 2칸 띄우기 또는 비좌석일 경우 1인당 6㎡ 면적 확보
모임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친목적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방역 수칙 준수 및 각 지차체 모임 기준 준수	**9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3인** 이상 금지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출장	**가급적 줄이기**	**최소한으로 실시**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외부인 응대	**간이 회의실**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모니터링 (체온, 호흡기 증상 확인)	**1일 1회**	**1일 2회 이상**		
의심자 조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근무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사무공간	노동자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노동자 간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	1단계 기준 +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2·3단계 기준 + 식사 시 대화 금지**
휴게시설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기존 기준+ **대화 금**지
환기„ 소독 , 위생·청결	**매일 2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사무기기 또는 사무용품 등은 **소독·청결 유지**			**매일 3회** 이상
통근 차량	차량 매일 소독,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탑승 시 마스크 착용		1·2단계 기준 + **통근 차량 탑승자 기록**	3단계 기준 + **한자리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 상시 마스크 착용**		**1단계 기준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자제**		1·2단계의 개인위생 금지사항 **금지**	
기숙사	제한 없음	**2단계부터는 1인 1실 사용(권고)**,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붙임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21.7.1)**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1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콜센터용)**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2021.7.18.)

< 지침 시행 배경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7.1)**

○ **(배경)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맞게 지침 개정 필요**

○ **(주요 개선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지침 활용**

○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 단계를 적용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는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부터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3 회의 · 교육 및 모임 · 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인센티브는 7.25.까지 미적용)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단계별>

○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역수칙 준수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인), 18시 이후(2인) 가능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 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일 1회	▪1일 2회 이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 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 · 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도 「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2011.12)」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권고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계별>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2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 **4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실시**

<단계별>

○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차량 매일소독 ■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금지	■ 1단계와 동일	■2단계+탑승자 기록	■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7 기숙사 관리

○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의 기숙사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붙임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콜센터)**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남/여)**	명(/)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 수립 □ **미수립**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예 □ **아니오**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예 □ **아니오**	
	5)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명부 작성 및 관리(자체 시스템 활용가능 제외)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예 □ **아니오**	
유연 근무 및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1단계) 자율시행, (2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 (3단계)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 (4단계) 재택근무 30%	□ 예 □ **아니오**	
	2)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예 □ **아니오**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예 □ **아니오**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	□ 예 □ **아니오**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 예 □ **아니오**	
	5-1)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회의·교육,모	1)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예 □ **아니오**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임 및 회식, 출장 등	1-1)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사자 참석 금지) 준수	□ 예 □ **아니오**	
	1-2)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단계) 500명 이상 지차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미만 실시, (3단계) 50인 미만 실시, (4단계)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을 띄우기 또는 비좌석일 경우 1인당 면적 6㎡ 확보 등 기준 준수	□ 예 □ **아니오**	
	2)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3단계부터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예 □ **아니오**	
	3)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 예 □ **아니오**	
	4)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예 □ **아니오**	
	4-1) 모임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3인 이상 금지(18시 이전은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예 □ **아니오**	
	5)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예 □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1)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 (1단계) 1일 1회, (2~4단계) 1일 2회 이상	□ 예 □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 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3)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하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사무 공간 및 구내 식당 ·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 예 □ **아니오**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 · 책상 ·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 예 □ **아니오**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휴게실 관리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	□ 예 □ **아니오**	
	4-1) 개인 간 거리 유지	□ 예 □ **아니오**	
	4-2)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예 □ **아니오**	
	4-3)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2단계부터 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예 □ **아니오**	
	4-4) 식사 시 대화 자제(3단계까지) 및 금지(4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5-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4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6)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 부여	□ 예 □ **아니오**	
소독 및 위생·청결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정기 **소독**	□ 예 □ **아니오**	
	2) **매일 2회 이상 환기**(4단계부터는 3회 이상)	□ 예 □ **아니오**	
	3)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 예 □ **아니오**	
	4)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예 □ **아니오**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6)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	□ 예 □ **아니오**	
	7)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예 □ **아니오**	
	7-1)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실시	□ 예 □ **아니오**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 예 □ **아니오**	
	9)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매일 차량 소독**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10) **통근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1) 탑승자 **기록 의무화**(3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2) 음식물 섭취 금지, 차량내 마스크 착용(1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3) 한자리 띄어 앉기(4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일괄 Check			
기숙사 관리	1) 방역수칙 게시 및 외부인 출입금지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로 된 방역수칙 게시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 출입통제시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매일 **2회** 이상 환기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1인 1실 사용(권고) * 2단계부터 적용하며, 시설면적은 8㎡당 1명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보건소별 결과를 개인에게 문자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문자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 보관기한은 퇴소시까지 유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점검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1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붙임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일상 복귀	❶ 보건당국의 조치 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❷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❸ 확진 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3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구 분	1 단계	2 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방역체계 마련	모든 사업장(1인 이상)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지정, **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 보건소 등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 돌봄,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자율**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권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재택근무 30%**(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회의·행사·교육 등	**500인 이상** 참여시 지자체 **사전 신고**	영상 실시 대면은 **100인 미만** 실시	영상 실시 대면은 **50인 미만** 실시	워크숍, 연수, 행사 등 **대면 금지** ※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은 2칸 띄우기 또는 비 좌석일 경우 1인당 6㎡ 면적 확보
모임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친목적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방역 수칙 준수 및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9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3인** 이상 금지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출장	**가급적 줄이기**	**최소한으로 실시**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외부인 응대	**간이 회의실**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모니터링 (체온, 호흡기 증상 확인)	**1일 1회**	**1일 2회 이상**		
의심자 조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근무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사무공간	노동자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노동자 간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	1단계 기준 +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2·3단계 기준 + 식사 시 대화 금지**
휴식·휴게시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0분(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 휴식 권고**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기존 기준+ **대화 금**지
환기, 소독, 위생청결	**매일 2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사무기기와 사무용품 등은 **소독·청결** 유지, **전화기, 헤드셋 등은 개인별 사용 (일회용 덮개, 필터 사용)**			**기존 단계+매일 3회** 이상 환기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 상시 마스크 착용**		**1단계 기준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자제**		1·2단계의 개인위생 금지사항 **금지**	
통근 차량	차량 매일 소독,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탑승 시 마스크 착용		1·2단계 기준 + **통근 차량 탑승자 기록**	3단계 기준 + **한자리 띄어 앉기**

붙임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21.7.1)**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6판)**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2021.03.26.)

1. 방역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 **코로나19 현장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확진자 발생 등 **상황 대응**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의 **전담부서 지정** 및 **건설현장 내 방역관리자 배치**

○ **발주자-현장, 현장-유관기관**(보건소 등)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

- 방역관리자 배치 사실을 **현장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관리자에게 알리도록** 근로자 교육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수립**

○ 작업현장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활용, **공정 변경**, 현장 내 **동시 작업자 수**를 **최소화**하도록 작업계획 수립

- 근로자 간 접촉 차단을 위한 **작업동선 분리, 칸막이 설치** 등 고려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자재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근 노동자, 의심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유관기관에 **전파**

○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인력 부족**을 **대비**하여 **공사 계획, 근로자 관리대책** 등 수립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고용부, 1.31)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알콜용 손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에 안전관리비 활용 가능

○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2 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

❶ 사업주 행동요령

□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위생물품 지원**

○ 현장근로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보*** 전파 및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되, **대규모 집합교육 지양**

*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실·소실,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
(전파경로) 호흡기 비말을 통한 전파(기침·재채기) 또는 비말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는 경우
(잠복기) 1~14일(평균 4~7일)
(치료) 수액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백신·치료제는 현재 개발 중

- **일용직·외국인근로자도**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코로나19 행동수칙** 포스터, **불법체류자 통보제외제도** 등 **다국어** 안내물을 현장사무실, **식당·휴게실** 및 작업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ncov.mohw.go.kr) 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시된 다국어 포스터 자료 활용

○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

* 작업현장 내 주요 장소 및 화장실, 샤워실, 식당, 휴게실 등 공동이용시설

□ **현장 출입 관리**

○ **근로자·외부 방문객 출입 시 마스크 착용** 확인,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자 명단**(실제 연락처 포함) **작성**

- 출입구는 **최소로 운영**하고, 필요 시 **건강상태 추가 확인**(1일 1회 이상)

⇨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출근 금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고, 현장 방역관리자에 알린 뒤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근로자 관리**

○ ①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②**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③**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 권고***

*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난 경우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 문의

⇨ **출근 금지 대상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 권고 또는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고용허가제**(E-9, H-2)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미감염자임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미입국 근로자**는 **입국유예** 요청이 가능하나, **이미 입국한 경우** 사업장 인도 후 상황에 따라 **현장출입 관리** 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19 **무료검사** 및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 **검사 참여 독려**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 지침 전파**

○ **작업 중**이나 **휴식 중**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작업장**의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고, 창문 개방이 어려울 경우 최소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환기**

- 또한, **밀폐된 공간** 및 **실내작업장**에서도 **작업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

○ **공용 작업도구**, 차량 및 건설기계, 난간, 사다리,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표면**을 **수시로 소독**(일 2회 이상)

-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숙소 제공 시**, 건물 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개인 침구·수건류 **분리 사용**,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숙소 내 모임 금지**

○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대상별 소독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지침)」 참고

□ **단체활동 축소, 근로자 간 접촉 최소화**

○ 아침조회·집합교육 등 **단체활동**, 비말이 튈 수 있는 구호외치기 등을 **지양**하고, **소규모 단위**로 공지사항 전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화장실·휴게실·식당** 등 **공용시설**의 **동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식당 내 **칸막이 설치**, 식사시간 **시차이용** 및 **한방향 식사** 조치

- 식당 내 **마스크 착용**, 대기줄에서 **거리두기**, **대화 자제** 등 안내

- **휴식시간 분산**을 통해 휴게실 **이용 인원 최소화**, 휴게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취식 금지** 등 안내

❷ 근로자 행동요령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중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귀가조치**

○ 올바른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

○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포함한 **개인용품**을 **주기적으로 소독**

○ 작업 중 **일상대화는 자제**하고, 꼭 필요한 대화 시에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 **휴게실·식당**은 **개별 이용**하고 **이용시간**을 **최소화**, 실외흡연실 이용 시에도 **거리두기**, **대화 자제** 및 손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에서 작업 전 **10분 이상 환기** 실시

○ 일과 후 **소규모 모임**이나 **회식 자제**

4.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신고**

○ **발열·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

◈ 확진환자
ㅇ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ㅇ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의심환자 격리**

○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현장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와 접촉한 근로자**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기**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알코올, 락스 및 **소독제를 이용**하여 **격리 장소**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를 **철저히 소독**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의심환자 및 접촉자는 **유선으로 방역관리자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 현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그 사실을 **즉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고, 발주처·원도급사** 및 **인근 현장에 전파**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국토부**에 확진환자 발생 사실 **공유**

○ **현장출입자 명단 제공**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장소독** 등 사후조치 철저

- 확진환자에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 실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작업 재개 가능

* 소독 당일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소독제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1일간 사용 금지

- 확진환자 **동선과 겹치지 않는 근로자**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

*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나 신고·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

○ 발주처 및 시공사는 **현장 소독** 등을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접촉자 격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지기간 판단**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 등 **공사 재개** 조치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 **확진환자·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공사 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0.2.12)

○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

□ 민간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 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국토부, '20.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 **건설사업자**는 확진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발주자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

-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되며,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금액이 3% 이상 변동)도 반영

-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기한 연장**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보건복지상담센터, 129)되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붙임 1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 예방 단계

구 분	내 용
발주자	-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등 현장 배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대응계획 수립 - 근로자 현황 및 자재 수급현황 모니터링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독려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 원도급사·하도급사에 보건교육 시행 지시·확인
원도급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출입 시 명부 작성,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소속 및 하도급사 직원에 감염예방 보건교육 실시 - 보건관리자를 통해 근로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위생·방역물품 비치(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장소 중심 소독 실시
현장소장	-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지침 시행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 - 최근 2주 이내 외국방문 또는 이상징후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수시 모니터링 - 하도급사 관리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
하도급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시 모니터링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현황 점검 -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교육 - 소속 근로자 대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확인 - 아침조회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필요시 소규모로 실시 -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공간 확보
근로자	- 현장 출근 시 기침·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협조 -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수칙 준수
인력소개소	- 건설현장 인력 모집·제공 시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여부 확인

□ 사후조치 단계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구 분	내 용
발주자	-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 -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시 국토부,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현장 내 접촉자, 환자 동선 조사 보고 - 확진환자 발생 시 공사중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등 조정 검토
원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보건당국 신고 - 의심환자, 확진환자 발생 시 발주자,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의심환자 등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 현장 전체 방역·소독 등 시행 -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 폐쇄, 공사중지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 - 접촉자 특별관리
현장소장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및 상위기관 보고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로자 격리조치 및 보고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 - 보건당국 지시 하 현장소독 - 현장 출입통제
하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원도급사에 보고 - 의심환자 접촉자는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게 통보
근로자	- 현장 관리자의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 - 현장 외부에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체온측정 결과 등을 현장에 보고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

붙임 2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 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 3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사자

분류	정의	조치사항	접촉자* 관리
확진환자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중증도를 분류하여 입원치료,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해제 *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또는 자가격리 결정(역학조사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 (양성) 확진환자로 조치 - (음성) 증상 발현일(또는 입국일)이후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나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가능

참고20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2021.02.09.)

[공통사항]

<근로자>

- ○ 모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 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기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 * 특히 냉장·냉동 시설 등 저온환경 근무자는 각별히 주의
-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이용 후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관리자·운영자>

-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 ○ 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도록 안내하기
-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 안내하기

○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근로자]

- ○ 작업장 내 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는 매일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점검하고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 실내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퇴근하기
- ○ 개인별 위생복 등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과 공유하지 않기
- ○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식육의 발골·정형 등 작업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이용하기
-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 ○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하고,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 ○ 통근버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 사무실, 작업장 등을 충분히 환기 후 작업 실시하기
-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탈의실(락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가림막(칸막이)이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관리자·운영자]

- ○ 방역관리자는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 ○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기
- ○ 식육 등 납품·배송 시 대면 접촉자 마스크 착용 및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달하도록 교육·관리하기
- ○ 작업장 채용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방역지침 교육 시행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일용직 근로자도 유증상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이익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 사업장 외부인 출입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인의 방문목적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 작업장 내 냉동/특수작업복(작업화, 유니폼 포함)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공유시키지 않기
- ○ 작업장 내 냉동/특수작업복(작업화, 유니폼 포함)을 일용직(아르바이트생, 방문자 포함)에게 지급할 경우 반드시 세탁·소독을 완료한 청결 상태로 개인별로 지급하고 공유시키지 않기
- ○ 육가공 주요 작업장은 자주 환기, 소독하도록 지시하기
- ○ 밀폐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지도하기
- ○ 작업장 구역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작업 시 상시 마스크 착용 여부 및 간격 유지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근로자의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 작업장 내 기계·기구류, 냉장·냉동창고 등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안내하기
- ○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는지 확인하기
- ○ 휴식시간은 보장하고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운영하기
- ○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 ○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

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 작업 지시,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작업 중 대화는 자제

○ 흡연 장소에 2m 거리 두기를 가시적으로 표시(스티커, 페인트 등)하기

○ 통근버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 관리*하고, 적정 환기 시설로 자주 환기(2시간 마다 1회 이상) 및 손이 자주 닿는 표면(출입구 손잡이 등)은 철저히 소독(매일 1회 이상)하기

* 예시: 탈의실(락커룸) 내 개인 사물함(락커) 배정 시 일정 간격을 띄워 배정 등

○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고,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 등을 고려

○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 차량 운행 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기

○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작업장 내 공중화장실, 공용차량, 구내식당, 기숙사 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중 해당 유형(공중화장실, 대중교통, 음식점의 구내식당, 기숙사 등)의 지침을 준용

참고21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1.9.24.)

[일러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2021.9월 현재)]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우리나라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접종횟수	2회	1회	2회	2회
접종간격	8주~12주 (허가 4주~12주)	-	21일	4주
국내허가 제품명 (허가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21.2.10.)	코비드-19 백신얀센주 ('21.4.7.)	코미나티주 ('21.3.5.)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 ('21.5.21.)

1 기본원칙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예방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미완료자**도 **여전히** 대응지침 등 **기존 지침의 규제대상**이 되며,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기존 지침 및 수칙 등에 대한 **예외나 특례를 인정**

○ 다만 **다른 지침 및 수칙** 등에서 **예방접종자 및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 이 지침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및 수칙 등을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예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감염병의심자**로 보아 **기존 지침 등을 적용**

2 정의

○ 이 지침에서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3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3-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일정 요건(3-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3-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3-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준수(붙임 2)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3-3.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❶ 접촉자 분류 직후 및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 해제 전 검사 등)

* 고위험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의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필수

❷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 ❶, ❷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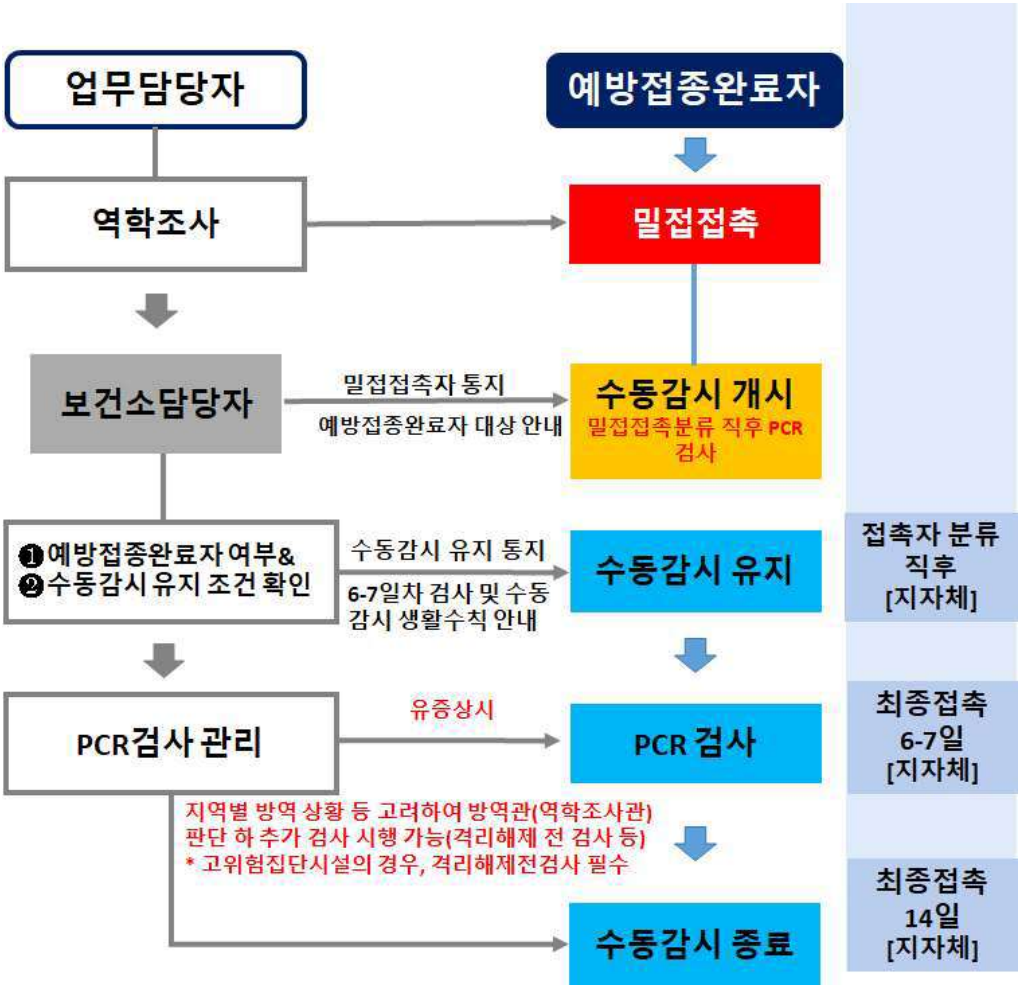

4 해외입국 관련 사항[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4-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일정 요건(4-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4-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입국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4-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무증상일 것
③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 해당 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공문**(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공지사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준수(붙임 2)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4-3.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❶ 입국일로부터 1일차 및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❷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❶, ❷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

5 방역수칙 적용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은 예방접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이나 수칙을 따름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 지침팀 등)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권고

6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단,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 관리(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권고

붙임 1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밀접접촉자용, 해외입국자용]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밀접접촉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 (종이 또는 앱)를 제시).**

Ⅰ 수동감시 관리 절차

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③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미완료자 또는 수동감시 조건 미충족) 자가격리 전환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Ⅱ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 조건▸ 충족 시 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를 받게 되며, 입국 이후 1일차와 6~7일차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입국자는 **검역소 및 실거주지 보건소에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Ⅰ 수동감시 관리 절차

[검역단계]

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제시,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 자기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지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실거주지로 이동

[지자체단계]

② (PCR검사)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③ (수동감시 실시)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수동감시 실시(자가격리앱 삭제)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입국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관할보건소)
- 검사를 받지 않거나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되며, 확진자는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Ⅱ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며, 조건 충족시 격리면제 가능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달리 입국한 만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

붙임 2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밀접접촉자용)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❶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❷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❶, ❷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월___일-___월_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월___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_____ 담당자:_____ 긴급연락처:_____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해외입국자용)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❶ 입국일로부터 1일차 및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❷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❶, ❷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월___일~___월_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월___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_____ 담당자:_____ 긴급연락처:_____

붙임 3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 확진자 밀접접촉 사례

가. 밀접접촉 확인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밀접 접촉사례와 동일하게 진행)	
통상절차 진행	① 밀접접촉자 통지시에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밀접 접촉자용)'도 함께 통지 ②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

나. 지자체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 *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것을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 확인 후	①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접종완료일 확인) ②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 ♣ ②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③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3-2" 요건 확인) -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④ 수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①, ② 요건 충족시 문자, 이메일 가능) *** 최종접촉일 기준 6~7일차 검사 안내 포함**
수동감시 기간 중	①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검사 실시, 결과 확인 및 통지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검사를 전제로 수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①,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 ③ 수동감시 해제 고지: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 소급적용

○ 개정 이전 지침에 따라 조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본문 "3-2"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실시 및 해제(수동감시 전환) 등 여부를 판단 및 시행할 수 있음

□ 해외입국 사례

가. [검역단계] 해외입국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입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입국시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 입국자가 제시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예방접종 후 2주 경과) ②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4-2" 요건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 ③ 상기조건을 충족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확인된 경우 여권에 스티커 부착,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해외입국자용)' 배부**
무증상자	① 자가격리앱 설치(특별입국부스), 실거주지 이동 안내 ②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검사(입국 1일차) 실시 안내
유증상자	① 검역소에서 검사 실시 ②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

나. [지지자체단계]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	
입국후 1일내	①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입국자 명단 확인 및 유선 연락 ♣ 해외입국자가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알려올 경우 ②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접종완료일 확인) ③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④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통지* 또는 교부 (②, ③ 요건 충족시 문자, 이메일 가능) *** 입국일 기준 6~7일차 검사 안내 포함** ⑤ 자가격리앱 삭제
수동감시 기간 중	①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검사 실시, 결과 확인 및 통지 *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자로 전환하며,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①,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 ③ 수감시 해제 고지: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 소급적용

○ 개정 이전 지침에 따라 조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본문 "4-2"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실시 및 해제(수동감시 전환) 등 여부를 판단 및 시행할 수 있음

붙임 4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table>
<tr><td colspan="2">1. 전자증명서(COOV):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td></tr>
<tr><td>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발급: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td><td> </td></tr>
<tr><td>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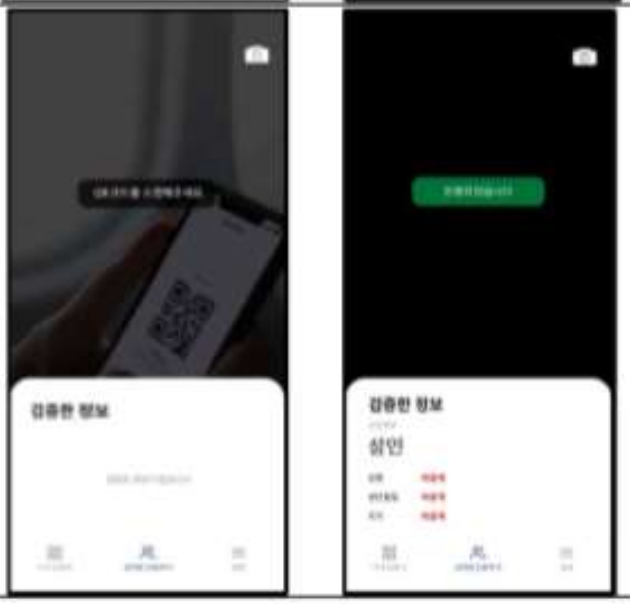 </td></tr>
</table>

2. 종이증명서를 통한 확인

* 발급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7.1 ~)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출생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 Si/Gun/Gu, The head of ( ) medical institution

3. 예방접종스티커

* 발급: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증빙정보가 담긴 스티커 출력→ 신분증에 부착(7.1~)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시안>

1차접종 21.00.00	제0000000000000호 홍길동 SAMPLE 질병관리청
접종완료 21.00.00	제0000000000000호 홍길동 SAMPLE 질병관리청

참고22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1.05.10.)

□ 개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 우선 지원 → 중증 이상반응**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지원방안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초래되었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자

* (**심의기준**, ①,②,③은 피해보상금 지급)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치료 후 사망한 경우는 치료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가 없거나 기저질환 관련으로 시행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백신 이상반응 치료와 관계된 비급여는 포함

○ **(지원절차)**

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	②지자체 기초조사	→	③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	④의료비 지원 (중중&④-1 충족시)
신고 : 의사 신청 : 본인/보호자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질병관리청

○ **(지원규모)** 1인당 **1,000만원** 한도

○ **(사후관리)** 근거 자료가 도출되어 **인과성 확인**되는 경우 → **선 지원된 의료비 제외 후 보상**

* 단, 동일한 진료 내역으로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

□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질의 답변

Q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중증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전 환자에게도 소급적용함

Q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초래되었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때 소득·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Q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기존 기저질환의 치료비, 간병비와 사망 시 장제비는 제외됩니다.

Q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진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조초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④-1)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④**지원액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이 지원액을 지급합니다.

* 예방접종 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 내역 제출 필요

Q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축적 등 인과성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면 선 지원된 진료비는 제외 후 보상됩니다.**

○ **다만,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Q6. 1차 지원받았으나,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이 되나요?

○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하나,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른 것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환자가 아닌 경우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 동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 **과도한 치료비**가 소요됨에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판단)**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접종부위의 국소반응 및 발열, 근육통 등 전신반응 등의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